
제1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1957년11월28일(단기4290년) 오전10시50분

의사일정

1. 제3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의건
 4.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분담금징수조례제정의건
 5.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체비지매각사업실시에관한건
 6. 자동(짚)차구입에관한건
 7. 폐회중의회권한위원회위원조례안
 8. 청원서심의의건
-

부의된안건

1. 제3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2面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의건 ... 12面
-

(10시 50분 개의)

○의장 박명준; 지금부터 26명 출석으로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신용석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의장 박명준; 오늘 회의록에 서명의원은 김상흡의원 박승목의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신이 있음)

그러면 회의록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보고사항에 들어가서 먼저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2. 보고사항

○간사장 신용석;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서울 경북 중고등학교 보결생 입학사건에 관한 징계 처분 건의에 관한 건입니다. 본건은 10월21일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건의한 건인데 11월26일자 처리결과를 교육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의원에게 오늘 유인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고위중인비3908호

단기4290년11월26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경기 서울 경북 중 고등학교 보결생 입학사건에 관한 징계 처분 건의의건

단기4290년 10월21일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제출

하신 포기의건에 관하여는 본적이 단기4290년 10월22일자로 징계요구를 하였든바 동년 10월30일자로 교육공무원 특별징계 위원회의 동징계의결사항이 좌기와 여히 통지하여왔기 이에 통보하나이다.

기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상황

1. 경기고등학교겸 경기중학교 근무

교장 김원규에 대한 징계의결

「교장 김원규 2개월 감봉에 처한다」

2. 서울고등학교겸 서울중학교 근무

교장 조재호에 대한 징계의결

「교장 조재호를 이개월 감봉에 처한다」

3. 경북고등학교겸 경북중학교 근무

교장 서병성에 대한 징계의결

「교장 서병성을 2개월 감봉에 처한다」

○장을순 의원; 이제 건설국 소관 토목과 관계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을 나와달라고 했는데……아직 만나와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관리과장에게 본의원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토목과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국동 「로-타리」 부근을 본의원이 지나다가 사람살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망홀」 속에 어떤 사람이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혼자 끄내려고 하니까 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사람 한분과 같이 그사람을 그인근 병원에 갖다가 치료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 「망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회 개회초부터 의회에서 수차 논의가되었고 또

한 감사 당시도 「망홀」 문제를 수차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내를 다녀보면 「망홀」 뚜껑이 없는 것이 허다한것을 본것만은 사실이 옳시다.

이것을 시급히 「망홀」 뚜껑을 닿도록해야할 것이며……마
답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훔쳐다 팔아먹는다 고철장사가 그것
을 사간다는 말도 왕왕 들었습니다.

건설국에서만 논의할것이 아니라 경찰국과 합의해서 「망
홀」 뚜껑을해서 덮는지……이것은 고철상에서 산다든지 현재
고철상에 다녀본다고 하더라도 「망홀」 뚜껑이 수백개 나온
다고봅니다.

「망홀」 을 고철상에서 산다든지 이러한자는 폐단에 처할
것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망홀」 뚜껑의 해결을 하기를 요망
하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의장 박명준; 김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순 의원; 보고사항에 발언신청을 못하고 그냥 뛰어나
왔습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강을순의원은 분명히 인명구조를 했으니까 인명구조에대한
표창을 줄 방도를 우리 의회에서 당국에다 요구할것과 건설
국장은 직무유기 혹은 직무태만으로 공무원의 도의적 책임을
저야될 것이며

(笑聲)

또 한가지는 지금 관리과장을 통해서 토목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하라고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당연히 토목과
장……그러한 말씀 안해도 좋지만 토목과장이나 건설국장은
과실 상해죄입니다.

그것 내 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笑聲)

웃을일이 아니라 작년에 홍순우의원께서도 말씀이 게셨고 참 여러의원이 말씀이 게셨는데……참 우리가 완전히 길이라도 걸어갈수 있는……배를 좀 놓고 참 그야말로 호흡을 하나를 자유로히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밤거리라도 좀 완전히 걸어다닐수 있게 「망홀」을…… 「망홀」을 까지 생명의 위협을 준다면 이러한 서울 대한민국 수도가 도시로서는 면목을 일대손상을 초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문제를 보고사항에 경미한 안전으로 우어 넘길것이 아니라 철저히 집행부 당국에서는 먼저 서울시내의 전역에 공한 위험지구 혹은 위험지대의 도로시설을 완전히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느이 있음)

○의장 박명준; 지금 보고사항으로 발언요청한분은 이상더 없는데……또 다른분 보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나겠습니다.

이제 제3항으로 들어가겠는데……여기에 3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제정에 관한 건이올시다.

아시는바와 같이 이조례에 대해서 결의가 의원 재석수의 3분지2가 되어야 아마 이것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분지2수에 지금 됩니까?

(「한번 세여보세요」 하느이 있음)

지금 27명밖에 안됩니다. 상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결정을 못보겠는데……제3항과 제4항이 같은것이올시다.

그러면 3분지2수가 미달됨으로서 부득이 거기에 저촉안되는 5항을 상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있음)

이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갑수 의원; 시방 의장께서 재의요청안건이기 때문에 3분지2가 미달된다고해서 말씀이 게셨기 때문에……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한마디 의사진행상 부탁과 아울러 우리의원 여러분에게 반성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집행부……10분만 만나와도 만나온다 올라와서 아아 가가되면서 오십분식 되어도……함부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없어요. 50분식 느었는데도 나오지 않고서는 어디 집행부에 이런말을 할수 있겠어요. 집행부는 자기가 해당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무가 있어서 나오는 이외에는 나오지 않아도 좋아요. 여기나올 필요성을 느끼지안는 사람들이예요. 혹은 예산을 제출했거나 해당조례안을 제출했을 적에는 관계자가 나올뿐이지 만나와도 그외에는 평소에 나오지않어도 좋은 것이예요. 그러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만나온다 말들을 많이 하면서……현재에도 각 분과위원실에는 의원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또 혹은 나오고서 성원이 안되니까 유회시키세요 가지고살라 비꼬고 나가는 이러한 의원은 자기자신이 여기에 무슨 책임을 지고 안진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할것이에요.

(「울소」 하시는 있음)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것이에요. 자기가 할 사명을 망각하고 설라……이러한 의원은 도대체 우리의원자체의 징계위원회에 이것은 큰 결함이 된다고 하는것을 지적하고 싶고 마땅히 징계대상이 되는것도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상이 하나도 들르지않는다고 하는 이 회의자체를 생각할적에 통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은 이시간을 비롯해가지고 각분과 위원실에 있는 여러의원님들을 성명을 밝혀주세요. 받아들라는 여기에 보고해주시기를 특히 요청합니다.

○의장 박명준; 대단히 미안한일이 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5항을 먼저 상정하고 또 그 방을 통해서 나오시도록 하고 인원이 되면 그때에 3항 4항으로 들어가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박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지금 의장께서 3항하고 4항이 집행부에서 재의요청이 나왔다고해서 이것이 의원의 정원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그것은 문서상으로서 회의규칙을 보았을 따름이고 위 이 재의요청에 관한 3분지2선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표결할때만이 그선이 있어야만 표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 여기서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개최했으니깐 여기서 논의대상은 얼마든지 될수있는 것입니다.

논의를 충분히 일반 토론이라든지 찬부양론을 가지고 이것이 표결할때에는 3분지2선이 모자랄때에는 이것은 표결을 좀 보류하고 그 인원수가 잘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상 이것을 그러한다고해서 10분이나 20분에 끝날것이 아니고 한 의제에 대해서 적어도 30분이상 한다든지 토론할것이니 그때까지 많은 의원이 오면 그 시기를 보아서 표결한다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이 3항부터 그냥토론에 부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 의원; 이제 박의원께서 규칙발언을 하셨는데……규

칙에 모순입니다. 왜그러냐하면……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이것이 전자……전에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든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여기 제19조에 1항에 이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그래서 재의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2항에……. 「전항에 요구에 대하여 재의에 결과 의원정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의안은 폐기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안을 심의할 때에는 3분의2가 나와가지고 ○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의장 박명준; 그러니까 지금 제5항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그것은 안되요」 하는이 있음)

이의원 말씀해주세요.

○이갑수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엄연히 3분의2선이 될수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실에 있어요. 제가 의사진행상 말씀드렸습니다.

특청으로 했으니까 결론을 그어주세요. 만약 이것을 결론을 안지어주시면 본의원이 여기서 동의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면 반드시 찬동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특청이니까 이것을 해주시면 3분의2선을 넘길수있는 것이고 3분의2 출석으로서 능히 할수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문제는 먼저

선결조건인데……만일에 응해주시지 않으면 본의원이 다시 나와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결정을저서 넘기겠습니다.

먼저 특청으로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저 어떻습니까? 운영위원장 어떻게 한명 각방에 사람을 보내서 좀 독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발언주시요」 하는이 있음)

김의원 먼저 하십시오.

○김재광 의원;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에서 하나의 선포를 하시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셔야 될것입니다.

지금 이갑수의원이 의원에 대한 도의심과 자각성을 말씀하셨는데……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 본인들에 가지는 도의심에 호소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의에대한 개최성과 또는 진행사항과 ○법을 사회를 주체하시는 의장이 마땅히 실천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갑수의원의 말씀은 하나의 참고로서 ○자가 비판하기로 하고 제5항부터 이제 선포하신 ○과 마찬가지로 실행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규칙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강을순의원이 119조에 재의요청에 대한 일 반적인 그 법조문을 말씀했는데 전항에 요구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결과 다시말하면 재의요구가 왔다 의회에서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재의를한다 말씀이지요. 재의를 해서 재의결과 의원 정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얻지 못할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 토의 해서 안된다 하는 여기에 명백한 조문이 없는 것이예요. 이것

은 어디까지나 표결에 대한 그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누구의말이 옳다든가 그르다든가 시비를 가리자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이런 장면에 처음 부딪혔는데 이것을 처음이니 만큼 이런 문제는 하나의 맹목적으로 혹은 모르고 논의도 안하고 이것을 그저 넘어가서는 또한 이다음에 예가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약 2항을 바꾸어서 5항을 심의한다 하게되면 여기에대한 법적인 해석이라는것을 철저히 규명하고 서로 해득한 다음에 넘어가는것이 절차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의견 같아서는 토의를 시작하며는 의원이 한분 두분……나중에는 40명가량 올것이에요. 표결할때에는 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법조문에 해석이 대단히 구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주세요.

○의장 박명준; 그러면 간곡한 부탁을 한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회의도중에 될수있는데까지 급한 대소변하기 외에는 이석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32명이 되였어요. 제3항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네 노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 의원; 방금 의장께서 제3항 의사일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갑수의원도 말씀을 했는데 또 김재광의원도 말씀을 했는데 의장께서 앞으로에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더 잘해주실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말씀 드리느냐 하면 의장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제3항과 제4항은 재석의원 3분지2가 못되기 때문에 제5항을 먼

저 한다는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있는 속기사들이 벌써 속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선포 안했어요」 하는이 있음)

앞에서 제5항을 먼저 심의한다는 말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제3항을 다시 3분지2가 되므로서 또한다는것은 의사진행상 혼란을 야기시킨것은 물론이지만 의장으로서 일 자체에 모독감을 의장님 스스로가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5항에 대한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논의한다 했으니만큼 제5항에 대한것을 먼저 해놓고 한 다음에 제3, 제4항을 논의해주실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장을순 의원; 이제 의사진행상 노의원이 지적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만 우리가 의회에 권위를 또한 좀 할말이 있드라도 참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의장 말씀이 3, 4항을 할려고 하면 정원수가 부족되니 제5항을 먼저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의장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 그러나 선포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의원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그런 정도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포를 했다고하는것 아닙니다. 말씀은 할수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즉각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조의원 말씀하세요.

○조기향 의원; 그야말로 속담에 망건스자 장 파한다는 격으

로 어떤항 먼저하자……한다고 시간이 상당히 가서 말을 안 하려다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강을순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의견 같어서는 역시 지금 3, 4항을 하기 어려운점이 아닌가 합니다.

법에도 3분지2 출석이라고 분명히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렇고 입법 취지로 재의라는것은 보통 심리와 달라서 신증을 기해야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역시 3분지2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토의해서 비로서 투표 하자 거기에있는 것입니다.

정원수가 지금 30명 되었어요.

(「되었어요」 하는이 있음)

되었으면 몰라도 안되었으면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되었으면 괜찮습니다.

○의장 박명준;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한 재의요청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할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하고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자 나와주세요.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의건

○도시계획과장; 본조례는 단기4290년도 5월20일자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가지 설명드릴것은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원래 본위원회는 이 성격이 자기의 권한으로서나 혹은 어떤 위임을 받아서 행사하는 행정청이나 혹은 의결기관이나 이런 보조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자문이 있을때에 그 의견을 구○한다거나 혹은 연구하고 조사자료를 제공하는데 불과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의견에 있어서도 채택 여부는 전혀 시장의 권한에 속할뿐만 아니라 또 설혹 그 의견이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그사실에 대부분이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한 그 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의의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은 본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간사외에 상임위원회를 하나 두는것이 운영상 좋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를 능률적으로 할려고 하면 그 분과위원회 안건에 있어서 그 상호간에 있을수있는 통일성에 결함을 조정하고 동화해서 이것을 종합한 의안을 신속히 작성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외에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하에서 이 두가지를 좀 검토 참작하셔서 이것을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재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건설 소관이니까 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김재광 의원; 본 조례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규칙 기타 그외에 조례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중 시사편찬계위원회 그외에 여러가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균형적인 문제를 아울러 본조례에도 모순성이 있다고 하는것을 집행당국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조문 골자로 있어서 제3조에 위원회 정족수와 더부러서 위원회 성격을 말했고 거기에 대한 임명 절차에 대한것을 논의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문제를 다시 검토한 결과 제3조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단서만을 삭제키로 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으로 조직한다는 이 집행부의 요구를 우리로서는 과거에 의회가 제정한 제3조에 있어서 단서 「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차를 위촉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4조에다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부시장으로 하고 1인은 의원의 호선으로 한다」 이와같은 문구를 여기에다가 삽입했든 것입니다. 집행부로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와같은 하나의 도시계획권을 수립하는 중대한 이 과업이니만큼 적어도 전문위원에 대한 정족수를 15인으로 하니만큼 위원장은 두사람이 필요하다는것을 또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의회에서 제정된 부위원장 2인은 의원상호간에 호선키로 되였는것을 그 한분만은 집행부 부시장으로 보한다는 이와같은 명문을 넣은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장이 위촉하는 이

도시계획 위원회 자체가 시장의 자문에 의하는 까닭에 또는 사업 전체가 시의 보조금으로 의존하는 까닭에 어디까지나 시가 하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직에 그대로 보케 하기로 다른 한분에 대해서는 위원중에 호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있어서 건설위원회로서는 서울특별시의 회 의원과 그 부문에 속한 전문적인 학식관 및 경험이 유한 자로서 한다고 이렇게 수정을 했든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의회가 제정한 5조에 위원은 그 부문에 속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유한자로 한다.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실비 변상할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도시계획 위원회라든지 그외에 여러가지 결말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의회 의원으로서 위원회에 승격을 규정한 이자체에 있어서 반대한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의회 라는 것은 하나의 공무를 띠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규정 된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응당 여기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 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의혹과 요구에 응하는 우리의 위치로서 응당 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의미에서도 응당 여기에 참여할수 있는것이라고 보는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그렇다고하면 금번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수있는 사람이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으로 이것은 해임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할수있는 율이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이 이것을 위촉한다 했기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제3조 단서 삭제와 단서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한다 일인은 부시장으로 한다 일인은 의원 호선으로 한다 제5조에 있어서 위원은 서울 특별시 의회 의원과 각 부문에 속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술 및 경험이 유한 자로서 한다. 이와같은 3개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박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집행부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자치법에 지방 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을 정하되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시말하면 모법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다시 말하면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는 명백히 내무국 재무국 사회국 건설국 경찰국 산업국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집행부가 의회에 내놓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이 조례를 볼것같으면 이 도시계획 위원회라는것이 법이 규정된 하나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게된 그러한 기관이 아니고 또한 건설국장의 자문기관도 아니고 어데까지나 서울특별시장 자문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위원회가 그런 법에 없는 하나의 자문 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를 설정한다면 어떠한 법과 어떠한 시행령에 그 기초를 두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집행부측에서 좀 답변하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것이 좋을까요?

(「우선 답변들읍시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나와 답변해주세요.

○부시장 신용우; 박수형의원께서 어떠한 법령의 근거내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내놓았느냐? 이런 물으심인데 시가지……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에는 내무부에 도시계획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서 내무부에 도식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두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도시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는하나 각 지방 자치단체로 보아서는 서울특별시에 도시사업이 국내에서 더 큰데가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도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중은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준해서 서울시에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의견을 얻어가지고 시장이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옳다는 이러한 견해하에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서울시에도 종래에서부터 두어왔고 두어두는 의의가 더욱 있는것을 저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시의 규칙으로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의회가 발족 이후 지방 자치법 시행이후에 자치법 시행령 40조를 보면 심의회나 위원회를 둘려면 조례로서 제정해서 그런 위원회를 두어라 하는 조문이 자치법 시행령 40조에 그런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종래같으면 규칙으로 제정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회

의 지혜를 집행기관에 가져올수 있었는데 자치법시행 이후에는 이런 위원회나 심의회를 둘러면 자치법 시행령 40조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해서 해라……하는 이런 시행령이 있기때문에 종래에 작성되었든 도시계획 위원회를 이 조례로서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사업에 중요성으로 보나 법령에 범위로 보나 종래의 규정으로서 시행하는것 보다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의 규정으로서 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운영하는것이 법령에 규정에도 맞고해서 이런 조례를 내놓은것이 옳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박수형 의원; 네.)

(「의장 질의하나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신사회의원 말씀하세요.

○신사회 의원;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약간으로서 조직한다. 제4조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 부시장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서울특별 시의회의 인준을 받는 자로서 한다……여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분은 서울특별시 시장이 위원장으로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로서 철칙같이 되어 있지만 그외 위원중에서 한사람 호선한다……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이 모호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부시장과 시장은 그직을 가지고있는 한 할수있지만 그외의 위원중에서 한사람이 직을맡게 되는데 그 한사람의 직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 지금 신사회의원께서 말씀하신 임기문제는

전혀 여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거라든가 기외 제정된 임명이 아니기때문에 다른 돌발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는데 임기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의회 의원에 대한것은 자동적으로 의회임기와 더불어 갱신이 되는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이상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있어요」 하는이 있음)

○장을순 의원;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의 재의를 제출하신 자치단체의 장되시는 분에게 제가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다만 하나의 그 법률안……조례안은 서울시 자치체의 법률안이 올시다.

법률안을 제안하는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재의…… 재의라고 하면 119조를 근거로해서 제출할줄 압니다마는 그 재의에 대한 설명서가 전연히 부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원 여러분이나 이사람이나 도저히 알 도리가 없어요. 그 재의하는 원인의 설명서가 없나와있어요.

(「여기에 나와있어요」 하는이 있음)

여기는 안부엿어요. 그것은 그런 정도로 인정해두어도 좋아요. 그렇다고하면 다만 119조의 의회가 법령위반이나……또한 월권했다고하는 사실을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으로 머리가 나빠 그런지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월권했다든지 법률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조문을 의회가 월권했다 어떠한 조문이 법에 위반했다는 근거를 정확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각자 의원이 납득이되고 재의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에 119조는 이사람의 생각해서는 하등의 조문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자치단체의장 어느분도 좋습니다.

의회가 어느조항에 월권을했고 어느조항이 법령에 위반되고……이것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강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용우; 아까 자치법 시행령 40조를 말씀드렸읍니다.

그 40조에 자치단체이 장이 소관사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무슨 조사회나 심의회니 연구회니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자기의 소관하는 사무를 시행할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자치법 시행령에 만들어주었읍니다.

이것은 그 근본취지가 자치단체의 장이 그직무를 수행하되 그러나 그기관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시행을해라……이러한 취지가 되기때문에 이 도시계획 사업은 이 집행기관으로서는 건설국 도시계획과를 두어가지고 이 도시계획사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있는 공무원의 뇌을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견을 더이상 그뇌 이상의 지를 얻는것이 도시계획 사무를 진행하는데 의의가 크고 가치도 높고 효과도 크게 낼수가 있다고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두어야겠다는 그 단언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위원회가……본래 취지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만은 도시계획 위원회가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권능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관청처럼되고 직접 민간과 상대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처리해 나가고 그러한 관청이 된다는 단독적인 안을 가지고 처리할수가 있다면 그 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에 선임이라고 하는것이 대단히 소홀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 자체의 임무가 시장의 도시계획사무를 수행하는데에 이러한 방면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고하는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과 또 이것을 조사해주시요 하면 그것을 조사해다 주고 그래가지고 조사해오고 심의해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지혜가 오는것을 시장이 채택……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나오라고해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그런 구속이 없습니다.

애당초에 물어보는 기관이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해오고 조사해온것이 있드라도 시장으로서 소견이 혹은 소신이 다를때에는 그의견을 채택하는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안을 그대로 시장이 채택을 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거진 빠짐없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서 다시 걸쳐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채택함으로서 결정되어 나가고……대부분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데에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할 이유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들이 해석하기에는 의회서 동의해서 위촉하는데…….그러한 위원을 위촉하는데 의회의 동의까지 얻을 필요까지 없지 않은가 또 저의보다도 더 이상의 뇌를 얻기위해서 하는 선임이니만치 위촉하니만치 학식이나 덕망이나 경험

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에 저의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문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를 얻어야만 저의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위원은 그렇게 의회에서 걱정을 안해주시더라도 斯界에서 국내에서 일류가는 분들을 될수있으면 그위원으로 모셔서 그뇌를 우리 집행기관에 가져온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서까지 커다란 염려를 안끼치더라도 될수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걱정을 받지않게 저희들이 삭제해달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맞아올려고 생각하고있고 저희들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구성하고있는 저희를 공무원에도 지금현재의 제도로써 의회의 동의까지를 지금 바라지않고 있는 여러가지 비중면으로 보나 또 그외에 서울시의 행정의 다각적으로 여러가지로 각종 심의회가 나타나게 될 그러한 예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무원을 가지고 보좌할것이 얼마든지 예기됩니다.

또 우리가 조사할 기관 이러한것이 많이 생길것같고 또 필요한때는 생기고 필요치 않은때에는 또 폐기를 하고해서 비교적 적고 이러한 구성으로 위원회가 생길때마다 그위원회 구성하는것을 따로 따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번거로운 것을 피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정신인데 강의원께서 그것이 월권이나 그것이 위법인가 어느점이 월권이고 어느점이 위법인지 애매하다 이러한 말씀인데 아마 그위원회가 위촉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라 위법인지 아닌지 그렇게 들어내고 위법입니다.

이것을 들어내고 월권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들이 겠읍니다마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성격을 들어볼때 위원회에 위촉해서 동의를 얻어라 그렇게 반드시 안하시리라 그렇게 동의를 하실것이 없다고하는 그동의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성격을 잘 참작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회가 생겨나올때에 그러한 예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점 충분히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질문에 대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위원회 자체는 법이나 영에서 나타난 것을 반드시 집행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129조를 적용시킨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면 구대여 집행부로 하여금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과거 관치 행정당시에 조례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것은 부위원장에 대한 문제와 그외 7조, 8조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하고 우리 건설 분과 위원회가 과거에 보낸 그러한 案라는것은 하등의 큰 결함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기때문에 이것을 고집할 필요없이 건설 분과 위원회에서 보낸 안대로 당연히 이것을 수락해서 관계없다고 보기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부위원장 2명중에서 1인은 부시장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1인이라도 호선해서 누구가 되든지간에 마땅히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있어서 하등에 고집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본원 의원은 다시금 집행부로 하여금 고집하지 말아주십사 하는것을 한마디 말씀해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조기항 의원 말씀하세요.

○조기항 의원; 지금 집행부로서 개정안중에서 골자를 보면 의회의 동의를 마땅치 않다는것이 골자인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 도시계획 위원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각자의 소유권이 존중히 정해져 있습니다. 있지만 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 결정은 역시 어느정도 개인의 소유권을 억압해 가면서라도 도시계획을 되겠다는 가장 강력한 권한에 속하는것이 이 도시계획의 사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이 사실상 도시계획 위원회라고 하는것은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 역시 큰만큼 인원 구성에 있어서도 제 정신을 철저히 저희가 생각하고있는 도시계획 말하자면 공동생활을 하고있는데 이 도시계획을 하시지 못한다는 중요성과 또 개인의 자유를 이만치 침해한다고하는 이 두가지 점을 가지고 여간 ○신중히 고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의 그 사명이 지극히 큰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의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당당히 여기에 대한 기술만 가진분들만 아니라 이러한 그 정신과 역시 철저한 인식을 가진 분들만이라야만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위원들을 사실상 위원장 부위원장을 시장 부시장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평소부터 존경하고 우리가 믿는 바이니까 그것은 좀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기술경험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라 과연 어떤분들이 될것인가. 물론 시장이 위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斯界에 명성이 높은 전문가들에게 위촉을 하리라는것이 또한 예상되는 바이올시다마는 우리가 이제도를 만들기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특 털어놓고 말씀드리자면 현 시장 부

시장님 기타 관계 여러분들이 구태여 여기에 고집을 하지않겠지만 이것은 현 제도로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내가 솔직히 심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들이 계신것을 배정한다고해서 의회에 내논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이의없이 다 통과되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의회의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별로 이의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필히 삭제해 달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하고 있는 하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 고집하시는데 재삼 말씀드리거니와 저희로서 필요가 있다고 해야할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를 만든다는 것이 역시 의회 기관으로서 지금 내무부장관이나 혹은 시집행부가 이렇게 잘 하는분들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 의회를 창설해 놓았다는것은 역시 암만 잘 하더라도 민중의 의사를 들어서 관청의 의사만 아니라 민중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면 일일이 집행하는 위원들의 임기문제에 있어서 석연치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임기가 없고 보니 어느정도까지 임기로 한다. 도시계획이 다 완성될때까지 라든가 뭣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조례에도 없으니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 박명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위원회에 오래동안 상임위원으로계신 분이 이내용 여러가지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

떨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필요없소 다 압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들을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언요청한대로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홍순우 의원; 아까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부시장 답변이 좀 모호합니다.

무슨 답변을 이와같이 할것 같으면 지방 자치의 장의 필요로서 인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에 의거해 가지고 그 사무를 범위내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그 조례를 의회의 조사위원회나 기타 각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 자치법 119조에 의거해 가지고 먼저 본의회에서 통과시킨 그 조례가 무슨 월권이나 말이에요.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여하를 얘기하지만 좌우간 자치 단체의 조례를 정하는것이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거기에는 의회에서 월권행동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되는가 하는것을 얘기하지만 지방 의회에서 통과된것을 당연히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언제든지 지방자치에 있어서 제권한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니되는것이 그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있는 위원 임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하는데 도시계획 위원회가 실지 조례에 대하여 하등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우리가 지방자치법 119조에 의해서 하등 저축이 안되고 단지 거기에있는 그 여러가지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와 절충해라 이것은 나머지 집행부에서 시장이 임명해야 되겠다는 것은 도저히 여기에 이론상 성립이 되지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재의 요청에 대해서는 집행부 당국으로 하여금 재의한것은 즉 말하자면 전에 원안 그대로와 이번 재의 요청한 안을 가지고 둘중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개정한 수정안 그외에 논아가지고 부위원장을 둘로하자 하든지 이런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재의요청이 나왔으니 그것은 원안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재의 요청하자는 그부분 이외를 갖다가 여기에 결정을 한다는것은 도저히 재의 요청 본지에 어그나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김주홍의원 말씀하세요.

○김주홍 의원;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여러차례 논의가 되었고 또 이 재의 요청후에 재 상정된상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에는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의가 왔으므로 해서 대단히 번거롭게 되였읍니다마는 원래 이 조례 제정이 라는 것은 대단한 특별한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올시다.

제가 믿기에는 이 조례제정 경위를 보면 원래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규칙으로서 시행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시계획 위원회라든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에 의뢰하지 않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규칙으로 정한상 싶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의회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예산을 부여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예산을 부여해야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회라는것은 법에 의해서 되지 않았고 시장의 권한으로서 설치할만한 이런 근거도 있지않고 해서

이것은 지방 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구를 형성하고 따라서 그기구 밑에서 예산을 부여할수 있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이 나왔고 또 의회가 이에 대하여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원래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인것을 또 재의 요청한 조례안과 기타 과거 의회에다가 제출한 안과 또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한 안과 여기에 대한 내용의 그 차이를 볼것같으면 결국 다른데 있지않고 위원구성하는 방법 여기에 있는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집행부로서는 위원구성을 갖다가 시장 자의로 하도록 해달라 이것과 또 부위원장 설치 역시 부시장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상임위원을 설치하도록 해달라 이러한 세가지 구성에 있어서 요점이 있고 또 우리 시의회로서는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게 해달라는 그점이 차이가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중대한 무슨 의견의 차이입니다마는 해도 효과에 있어서는 크게 중대성을 갖지않는 지 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성격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몹니다. 하나의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자문에 의해서 응하는 권한 밖에 없어요.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았자 무슨 커다란 효과가 날성싶지 않고 집행장인 시장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정하는데 있어선 책임을 시장자신이 지는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했다 그런 구실하에 그 책임을 의회가 논아가지는 도

의적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자치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 동의뿐만 아니라 선출하는 조건으로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국토계획의 하나이고 시장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러한 강력한 또한 일방적인 행정 행위가기 때문에 이것을 본법이 달라지기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밖에 띄우지 못할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얻는 다든지 위원을 선출한다든지 해보았댓자 효과에 있어서 별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서 이점에 대해서 크게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제생각 같아서는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재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수정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보내면 그것이 적법인가 아니가 이것은 아까 홍순우의원께서도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견에 맡기기로 하고 위원구성에 대해서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그범위라는것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구성범위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시의회 의견이 반영이 되서 우리가 기도하는바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점도 있고 해서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자치력을 발휘하는 기관이라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치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위원구성을 해야할줄 압니다만서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고집해서 서로 의견의 차이를 가져와 보았댓자 효과에 있어서 의의가 없는줄 알고 제생각 같아서는 건설위원회 수정한것을 채택해서 보내면 어떨가 이런 의견이

올시다.

○의장 박명준; 발언요청한 김항복의원 말씀하세요.

○김항복 의원; 첫째 한문제는 이제 홍순우의원도 지적했지만 재의요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시장님의 답변도 대단히 애매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원만성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의 요청하는데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될줄 압니다.

조례에 대한 재의요청이니까 119조가 자치법에 엄연히 있으니까 이런 조문에 대해서는 어째서 재의요청한다는것을 설명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 대해서 말하면 지적할것은 지적안하고 말씀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재의 요청한 이상 법적 효과가 나타나니까 119조에 의해서만 성립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조문에 저촉이 안된다면 재의 요청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법 119조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건설위원회에서 새로히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새로히 수정안 나온데 있어서 대부분 거기 찬성을 합니다.

제4조에 가서 즉 말하자면 원안에 반대하는것이 위원 위촉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 하나 부위원장을 증설한다는것 마지막에 상임위원관계 세가지인데 부위원장을 둔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아무래도 대국적으로 여러사람의 의향을 듣는것이 좋으니까 시장 부시장만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면 부족할줄 압니다.

그래서 이두분은 집행기관을 대표하고 있을테니 널리 의향을 듣는것이 좋을테니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는것

이 좋을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가서 그러면 어떤사람이 위원이 되겠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시의원하고 전문위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역시 국회의원을 제일에 놓고 전문위원을 넣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5조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 안대로 시의원 그다음에 전문지식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넣는것으로 보고 그 두가지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3조를 삭제한데 있어서도 역시 건설위원회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빠진것이 있어요. 제5조에 위원들에 위촉에 대해서 누가 위촉한다는것이 없는데 제3조 단서를 빼면 누가 위임한다는 말이 성립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안에 대부분 찬성하되 3조 단서 삭제한다는 것을 찬성하되 누가 위촉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제5조에 가서 위원은 서울특별시의원과 각부문에 걸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고 넣기전에는 건설위원회 안이 성립이 못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조를 첨가해서 시의원과 경험이 유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는것으로 고치면 이것이 대단히 원만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위원회에 있어서도 착각을 하셨습니다.

3조 단서는 삭제하되 5조끝에다 고것을 건설위원회에서 용인해 주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규칙입니다」 하는이 있음)

○박수형 의원; 도대체 이 시의회 간사장 혹은 의회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일침을 가하지 않을수 없는거예요. 시의회가 발족한지 1년6개월이 경과되었다 그거예요. 이런것을 하나 처리할줄 모르고 어떻게 해먹느냐 그거예요.

이 재의라는것이 말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수결로 이미 결정해 보냈다 말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게 불만이니까 재의를 요청합니다 해서 재의가 왔다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소관사항인 건설위원회에다 재의요청을 돌리는것이 아니예요. 이런 의사에 대해서는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 넘기면 운영위원회는 의장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재의재청이 왔다하면 요 재의요청들어온 부문만 하면 되는거예요. 이것을 건설위원회에다 넘겨서 수정을 했다 말예요.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가지고 앞으로 자꾸 이전례를 따르면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권위가 상실된다 말예요. 이런것을 특별히 유의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결한 거기 대해서 3분지2 정족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놓고보면 거기는 3분지2 정족수가 필요없다 말예요. 이것을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이것을 되는대로 동정적으로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제의된것을 그대로 하자면 되기는되요. 그러나 정상적인 의사가 아니라 말예요. 그러니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특별히 고려해서 이런 좋지못한 전례를 안남길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김재광 의원; 이제 아까도 몇분이 이유를附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해 왔다는 이런말씀이 계신데 분명히 이유가 두가지를 維列해서 여러분에게 유인배부한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새삼스러히 말씀드려도 관계당무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고 다만 지금 홍순우위원장과 박수형위원장이 여기대한 절차 운운하셨는데 우리도 심각히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 재의요구가 일단 건설위원회에만 회부안되고 운영위원회에도 회부되서 심의된것을 입니다.

또 재의되었다고 해서 거기대한 수정을 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없는거예요. 법령과 우리의 가지고있는 권한으로 보아서 거기대한 수정을 못하는 이유도 없고 수정을 했다고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재심이 요구되서 이유의 타당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재심했고 수정했든 것입니다. 일시적인 면으로서 오직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재의에 대한 수정을 하고저해서 동시에 제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택여부는 시가 제출한것을 받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에 통과한대로 통과하느냐 不然이면 건설위원회에 수정안을 받아들이나 하는것이 본회의가 가지는 권한일것이지 하나의 의사사무 처리에 대한 절차의 미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항복의원께서 좋은말씀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위원에 대한 위촉문제는 자동적으로 조례 제1조 제2조에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한다고 했기때문에 시장이 위촉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안넣었습니다. 그것을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발언요청서 그대로 발언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김재윤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김재윤 의원; 지금 저 박수형의원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하

는……규칙발언을 하는데 그 규칙발언에 있어서 일리가 다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는것을 잠깐 의사진행상에 말씀드립니다으로서 해가지고 이걸 완결짓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의회에다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119조를 왕왕 남용을 해가지고 월권행위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재의요청이 間間 비일비재로 올라온다 말씀에 이것을 우리가 의회 탄생이후에 무려 10건에 달하는 재의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0건에 달하는것을 우리가 재의했다고 봅니다.

물론 재의요청을 할수있는 권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이렇게 해온줄 믿습시다마는 해온 내용을 볼때 하등에 법령에 위반되었다는가 권한을 침해했다는것도 발견할수 없어요. 지금 이문제를 볼때 그런 견지에 입각해서 재의요청이 나왔는데 석연치 못하다 말씀해요. 또 월권했다는데 있어서 발견할수 없고 다만 이런점을 삽입했으면 어떠냐 하면 이걸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에 개정안을 내면 하등의 구애를 안받는데 하필이면 우리 시의회에서 월권을 했다고 지적을 당하니 우리 의회로서는 월권한일이 없다고 설명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따로 수정안을 내노을 도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수정안 내놓은것도 말야 재의요청서와 더불어 안내고 개정안을 별도로 냈더라면 혼란이 야기될리가 없다말예요. 이렇게 되었으니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려 두시간에 공해서 이끌고 오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생각같에서는 개정안을 별도로 내놓길 열고 건설

위원회 수정안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건설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종결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질문 말씀드리고 올라온김에 발언권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도로수익자 분담금도 비율문제일 것입니다. 이것도 월권행위를 했다고 자꾸 내놓는데 뭐가 월권행위에요. 집행부에서도 주의한 것이고 우리 의회도 그 한계를 가려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김규원 의원; 본의원은 오늘 아침 좀 다른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재의요청에 대한 것을 一應 여기서 결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의제를 따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동해 노았으니까 처리하기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있어요. 의사진행상 이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제출하실 수 있는 성질입니다.

이 재의요청과 동시에 의사진행이 서투라서 이렇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내놓으신 개정안 다음에 밑으로 돌려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주로 집행부에서 재의요청으로 내놓은 이것을 먼저 귀결을 지어논 연후에 처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재의요청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3분지2 이상 출석으로 3분지2의 동의를 얻어야되고 또 그다음에 개정안은 그것을 동시에 표결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양찰하시고 재의요청에 대한 귀결을 먼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박수형 의원; 요것이 하나의 전례를 만들지 모를가보아서 갑론을박 나왔는데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 이라고 하는것은 15일 이내에 재의요청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건설분과 위원회에 소관사무를 적어도 통과를 시켜놓고 또 여기에다가 수정을 가한 다고 하게되면 15일전에 통과시켜놓고 오늘 또 수정을 가한다고 하는것은 모호한 점을 발견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생각 같에서는 우선 원의로 건설위원회에 그것을 하나의 개정안은 하나의 의제로 채택해서 재의에 대한 재의를 채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원의로 결정하느냐 이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건설분과 위원회에 개정안으로 내놓은것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귀결 진다면 이것이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의하고……재의에다가 개정안하고 같이 표결해서 처리하게되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셔서 본의원에 생각으로서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개정안은 3항인 4항을 재의를 채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안을 채택하느냐 귀결을 짓고 건설위원회에 개정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규정을 지으면 이것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김상흡 의원; 잠깐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려 나왔읍니다 무엇인가하니 부시장 답변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우물우물 하면서 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라고 하는것을 만들어놓고 실지일은 저4층 도시계획 위원회에 밀에있어요. 오늘날까지 해내려온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서울시내에 모 모 인사가 소위 위촉을 받았는데 몇해가 되드라도 그것뿐이 나타나본 바가 없어요. 무슨소리인가 하면 실지 관청에서 일을 딱 구며놓고 대외적으로 선전할때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해내려왔다 이것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금 재의요청에 정신이 도대체 저의 시의회에서 사람을 정하는데 여기서 총의로다가 승인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마땅하지 않아할것 없이 도시계획 위원회는 무엇인가 해노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 위원회는 자문기관이니 아프런 안이 나온다고 하드라도 채택할려면 되는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나와서 통과된다 하드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자의대로 마음에 맞고 한맛고 채택한다 이렇게 생각할것 같으면 구대여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들면 이것이 거기에 꼭 적당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전에 시정감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시공관에 운영위원회 라는것도 만들어놓고 관에서 이렇게 하라하면 에 잘하겠노라 이런 사람만 다 모아놓고 하라면 그렇게 하지않어요?

그런 까닭에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만일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듣지 않았다고 할것 같으면 법과 령에 의해서 이것은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배되니 이것은 우리가 응할수 없다 분명히 이와같이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그런까닭에 부시장께 하고싶은 말은 이것 권고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철회해달라는 것입니다.

재의요청을 철회해 달라는것을 철회할수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명분이 스지안는 말과 같은 재의요청은 응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와같이 말씀들여두고 내려갑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조영석 의원; 이문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상당히 논란을 거쳐왔는데 일단 간단한 처리방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재의요청을 해온 그이유가 지방자치법 제119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의회의 결의가……결정이 합의하냐 안하냐 검토해서 그 재의에 요청 내용을 우리가 먼저 결의하고 다음에 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방법을 다시 논의해서 결의하는 이런 순서로 하는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내놓은것은 개정안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그개정안이 라고하는것은 본의원 알기에는 개정안이 나올수 없다는것이 공포되기 전과 이것은 어디까지고 실지 과정에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은 내노을것이라고 볼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분과위원회가 낸 하나의 대안이라고 하는것이 좋겠지요. 이것은 집행부에 사전 타협을해서 타협을

전제로해서 결의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청에 대한것을 우리 의사로 결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또 질서있는 의사진행이 아닌가!……혼란된 의회를 바로 잡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장께서는 그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 박명준; 발언 요청하신 두분은 지금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이제 말씀한대로 집행부에 재의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김주홍 의원; 의사진행상 한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영석의원의 말씀하신것이 대단히 타당한데요. 그러한 결과가 생길것입니다.

앞으로 일을 좀 능률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부결이되면 3분지2로 부결되면 이안은 법의 조례가 있으면 좋은데 조례가 없는것입니다.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조례를 내놓지 않으면 그안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겠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그 건설분과위원회의 개정안이라고 하는것은 원안이 있어야 개정안이 있는데 원안이라고 하는것은 공포되지 않고는 원안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어요. 개정안도 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부시장이 여기에 나오셔서 우선 재의안을 철회하고 거기에 대한 건설분과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 정도의 성질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대개 보는것같으니까 그정

도로 개정안을 내놓을것 같으면 좋지않을까 그래서 또한 취급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조례가 없기때문에 폐기라는 경향으로 나갈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될수있는대로 부시장이 이를 처리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이갑수 의원; 발언통지서를 내놓고도 의사진행 발언을 모두 주시는 것은 당연 중대한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발언통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것 명백하게 규명해 주세요. 이문제는 가부간에 집행부에서 재의요청을 한것은 지방자치법 119조에 의거해서 재의를 내는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 119조에 해당 시킬수 없는 이조항에 재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19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해서 백보 양보해서 앞으로 절차상 운영상 그렇다고하면 이것을 취급하는데 아까 조영석의원께서 가장 정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문제를 개정안이라 나왔다는것도 공포를 할수없다. 원칙을 세우고 한가지 건설분과위원회에 묻겠는데 우리가 이문제를 그러한 개정안이 나올때까지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시든지 혹은 집행부와 합석을해서 의견을 존중하면서 개정안을 낼수없는 이안을 가지고 오늘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개정안이 없다고 보면 재의만 가지고서는 가냐 부냐 결정이 벌써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나올수없는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을 이르켰는데 즉 문제되는것은 의견을 존중해서 반드시 요하는것은 의견을 존중했느냐 개정안이라는 문제는 취소하지않고 집행부에 재의에 혼합시켜서

재의안에 협의를 해달라는 먼저 말하신대로 집행부나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협상해주시면 통과될 가망성이 있지않느냐 말씀드리니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나와서 이문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이응린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응린 의원; 여러분께서 장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셨는데 이 의견은 비슷비슷한 의견인데 서로 말이 아마 좋은 처리방안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하는것은 원래 이 의제자체가 무엇이고 하니 저 제정의 건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가 벌써 들리는것이고 그것을 논할것 없습니다만은 지금 얘기는 김주홍의원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안이 두가지 있을줄 압니다.

또한 조영석의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것은 두가지안이 있다고 보아요.

즉 어느것을 택하느냐 하는것인데 한가지는 먼저 우리가 제정해서 보내 안을 지금 재의를 해왔으니 먼저 제정한대로 공포해 가지고 그다음에 개정안이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개정안이 나온다고 이런것 하나하고 먼저 제정한것을 인정해 가지고 공포를 해가지고 개정안을 낸다고 이두가지 방향으로 하면 처리가될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이나 개정을 했다는 것이 원래 틀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속절차를 본다면 재의를 택하느냐 안하느냐 만일 택해가지고 공포해 가지고 이 두가지 문제로서 처리하면 간단한 처리가 나올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선 의장께서는 무슨 다른것보다도 이제부터 물어보아야 될것입니다.

이 재의니까 재의가 좋으나 나쁘냐 이것부터 가결짓고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이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이 많이 있는데 이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김규원 의원;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일단 표결을 해가지고 가령 이것이 불법이라든지 재의가 정당하다든지 그것은 표결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주홍의원도 말씀했고 또 이 재의요청이 여러날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시가 가까히 되었으니 오전회의를 끝마치고 오후 다시 속개하는 그사이에 재의요청 내려온것을 달리해가지고 이건설위원회의 재의요청 거기에 가까운것을 내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는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아까 이의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건설위원회간사 김재광; 이갑수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이응린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개정 또는 수정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문제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집행부에서 재의가 요구되어 왔으니 이것을 심의해서 보내달라는 의장 요구에 의거해가지고 우리는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 과오라고 보는것이 아니에요. 그재의자체가 어떠한 절차가 무엇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처

음부터 이것을 받을적에 90년 5월23일날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고 이 재의요구가 6월5일날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보아서 응당 재심을 할수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을 답변드리고 지금 이갑수의원께서 구대여 거기에 대한 말을하라해서 본인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위라든지 이것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의사에 그대로 좇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한 그대로를 우리도 집행부와 처음부터 논전을 8차에 거듭해서 논의를 했든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재의할수 없다 물론 이조례를 재정하는법의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러한 조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낸것이고 또 그조례를 제정한 15일후에 이와같은 재의를 요구하니 우리는 응키 어렵다는것 이러한 견해로서 논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외에 여러가지 우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내무부에 그문제에 대한것을 다각도로 연구한 후에 그렇다면 우리의회에서 양보하고 여기 우리 개정이라고하는 단서 삭제를 지우고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하고 나머지 한분을 의원으로 호선하자 그다음에는 임명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으니 그 인선문제에 대한 범위를 정했으나 당초에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로서 제정할 그 당시에 성질과 의사로서 보아서는 부득이 이문제만은 해야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응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문제에 있어서 저의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의로서도 취급해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저희 건설위원회가 개정안이라고 내놓은 자체는 어디
까지나 집행부와 충분한 타협밑에서 나왔다는것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의사진행상 시간이 이제 한시인데 연장해야
되겠는데…….

(「이것 끝날때까지 합시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것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장을순 의원; 이제 건설위원회의 김재광의원이 말씀에 저
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재의안이 의회에 오기때문에 의장이 건설위원회
에다 그 재의에 대한것을 심의부탁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개정안……개정안은 나올수 없다는것
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일종의 이 법률안이 공포가되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을 낼수 없다 말이에요. 그 재의에 대한
것을 법에 의해서 119조가 위반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의장이 심의부탁한 것으로 압니다.

별도로 다른 의안을 내라는 심의부탁이 아닐줄 압니다. 하
기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시비를 하고싶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부시장께서도 이 재의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았읍니다.

건설위원회의 개정안이 아주 만족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타협한 의
견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아까 부시장 말씀도 의회가 119조에 월권은 되어있지

않다고 확실히 언명했습니다.

의회가 월권되어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구대여 여기서 이 재의를 받을것이 아니라 일단 의회가 119조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의회의 존엄성을 비추어보아서 일단 返戻하고 그다음에 우선 공포를 가급적 속히 공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개정안을 내도록 건설위원회에 안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수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니 그후에 개정안을 내달라는것을 바라고 그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요」 하는이 있음)

네 동의하겠습니다.

(「재청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그러면 이 동의가 재청으로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이 있음)

(「첨가할것 있어요」 하는이 있음)

○박수형 의원; 자꾸 나오고싶어 나오는것이 아니고 문제는 사리는 사리대로 처리해야 될줄 알어요. 그러면 이제 동의자한테서 집행부측에서 건설위원회가 대안이라고 할까 수정한 의도에 대해서 하나 이의없다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와 이것이 건설위원회의 의도가 첨부되어서 이 까지 와서 역시 여러의원이 논의된 그자체가 집행부측에서도 이의없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동의에 첨부시킬것은 일단 집행부가 재의요청한것을 返戻해서 원안대로 공포한후에 건설위원회에서 거기서는 그대로 개정을 해라 하는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타협하는 의미에서 일단 여기에서 재의문제에 대해서

는 표결에 부치면 강위원의 동의가 통과될 것입니다.

통과되는데 거기에다 첨가할것은 통과됨과 즉시 건설위원회 안은 이대로 통과해서 거기에다가 첨부시키면 그것으로서 일단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협을 하면 일이 다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이 동의를 일단 물으시고 그다음에 건설위원회의 그의도를 하는 그 대안을 또한 통과시켜서 첨가해서 보내주시면 집행부가 공포해 버리면 이 문제는 일로 끝나는 것이예요.

○의장 박명준; 동의집에서 이제 받아주십니까?

(의석에서 ○강을순 의원; 받을수가 없습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먼저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개의하겠어요」 하는이 있음)

○문학우 의원; 이문제를 가지고 무려 두시간 10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하시는 의장님 발언 공평히 주시고요. 지금 의사진행이다 규칙이다 해가지고서 세번 네번 올라온 의원도 있으리라고 합니다.

처음 발언하는 의원에게 공정한 발언권을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5월23일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아직 집행부에서 공포를하지 않았어요. 그렇기때문에 한개의 조례안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와서 개의요청이 나왔는데 이것을 두시간동안 끌고서 왈가왈부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본 재의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가부 결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강을순의원 말씀하시는데로 재의안을 집행부에 返戻한다고 하면 이것 폐기가 되고마는 것이예요.

그렇기때문에 이 재의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가부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개의에 찬성 없어서 성립안되었습니다.

(「개의하겠어요」 하는이 있음)

○이갑수 의원; 결론은 다 듣고보니까 지어지고 있습니다.

재의에 법적동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받겠다 하는것이 동의입니다. 또 본의원은 개의를 할려고합니다.

아까 제가 건설위원회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정안이 아니라 집행부와 사전 심의할적에 합의를 충분히 본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푸린트에 유인물에 나는 「미스」를 했다고 봅니다.

개정이 아니라 합의를 보아서 한것이다. 합의를 보아서 했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을 집행부안과 동일하게 같이 나온것이다 보여줍니다.

백보양보해서 양보하는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일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양보를하고 그안이 합의를 볼것같으면 이것을 재의안이라고 보아서 이것을 본의원은 제119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또 집행부로 하여금 이문제는 이것이 끝난다음에 나와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과하는 말을 듣기를 전제해놓고 재의안을 통과시키는것을 본의원은 개의합니다.

(「찬성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개의에 찬성있습니까?

(「찬성이요」 하시는 있음)

(「의장」 하시는 있음)

○김제윤 의원; 이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이 재의 요청안건입니다.

재의요청이기 때문에 재의요청한 그안건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만 논의하면 되는거예요. 다른 하등의 由題가 될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면에 있어서 지금 건설위원회에 내놓은 개정안이 사실상 그것이 공포가 아직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개정안이 내놓은것이 이것이 무엇하다는 것은 누누히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안건 자체의 내용을 보게되면 사실 타당성 있는 내용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다음에 새로 내달라는 말씀을 하면 여기에 아므 이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갑수의원에 새로운 개의회가 또 필요가없는 것입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여기 올라오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재의안건에다가 이놈을 부대조건으로서 가결하는 방향에 의사진행을 아까 했지만 말씀을했지만 그정신은 좋아요. 아까 동의한분의 얘기 하나도 그러한 타당성을 지적해서 역시 동의에 대한 설명내용이 된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을 원만히 수습하고 의회의 의결방법을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의요청이 가결될 것으로 우리가 보면 그만일것으로 믿어저요. 동의내용이 이렇게 해있다는것을 역설해두고 이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물어요」 하시는 있음)

(「재개의하겠어요」 하시는 있음)

○의장 박명준; 재개의하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재광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구태여 통과할수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가 아니라 하나의 견해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이것이 조례로서 공포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개정안을 내놓을수가 없다. 저로서는 석연치 못합니다.

공포가 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하나의 조례자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수정도 할수있는 것이고 개정도 할수있는 것이요 공포가 되었다고만 반드시 수정할수 있는것이요 되었다고만 개정할수 있는 이것이 안되는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심의과정에 있어서 심의도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할수있는 것이 심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을해서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확정되었어요. 다만 집행부가 공포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절차만 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또는 월권이라고 해서 이것을 재의했다는 것이예요. 그 재의로다가 우리는 수정을 가한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제 동의에 있어서 내용에 그정신을 살려라 이것을 返戻해서 다시 나온다 다시 나와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수정이 나온다는것은 뻔한 일이 아닙니까?

이조건 자체를 가지고 대안으로 취급해서 제일 처음에 제정된 그당초에 제정된 조례를 우리가 재확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그부분을 또한 여기서 확정을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위원회로서 대안으로서

다시 수정을 가해가지고 내놓는것을 채택한다든가 삼자중에 이것을 택일을 해야지 다른 의견은 있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위원회로서 내놓은 이러한 대안 이것을 저로서는 통과를 보도록 개의를 하겠습니다. 재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찬성이요」 하는이 있음)

○장을순 의원; 이제 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안할수 없어요. 건설위원회에서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은 일전에 의회에서 통과를 본 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했어요. 그러면 이송한 도중에 개정안을 또 낼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법적인 해석을 합시다.

어떻게 내가 조그마한 법률을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우리는 사람이 무슨 여기에 하나의 이해관계 아무것 없습니다.

다만 절차만이 그방법이 다르다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재광의원의 그 개정안을 여기서 타당성을 논의한다고 하며는 3분지2선이 필요없습니다.

3분지2라는것을 논의할 아무것도 없는것이에요. 어떻게 3분지2선을 논의할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다만 집행부에서 온재의 여기에 주시되기 때문에 3분지2 출석과 3분지2의 동의를 얻어라 119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동의한 자체가 부시장에게도 물은바 건설위원회의 개정안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방법을 일단 우리가 이것을 119조에 월권한 사실이 있다하니 일단 공포해놓고 내놓는다는 한 조건으로 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라 이러한 조건이 뭐가 부당하다고 할 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비롯해 보내놓고 그다음에 건설위원회 개정안을 내는 조건이에요. 이러한 동의올시다.

그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이렇게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장내소연)

그러면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의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테니까 개의먼저 묻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갑수 의원; 의장 개의의 설명을 충분히 의장님이 못하시면 이 표결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개이가 성립되기 때문에 개이에 대한 표결 직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동의에 대한 근본 정신은 충분히 압니다.

또 타당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법을 모르고 지방자치법 119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이 재의를 했다는것을 잘알기때문에 동의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인식합니다. 하나 집행부로 하여금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있는 사실은 우리가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9조를 집행부로 하여금 위법했습니다.

나왔다는 사실을 전제로하고 이것은 사과를 해라 이거예요. 사과하는 전제밑에서 백보를 양보해서 이자리에 개정안이 나 올지도 모르니 이기회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재의에 대한 요

청한 그 조항을 집행부 재의로 간주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주
자 하는것이 개의에 요지입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장내소연)

(「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규칙 말하세요.

○김규원 의원; 규칙으로다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갑수의
원의 개의라고 하는것은 성립될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의 요청을해서 재의에 가부를 묻는데 이 재의를 갖다가 가
냐 부냐 이것만 우리가 정할것이지 이갑수의원은 건설분과위
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용인해주자 이것은 안되는 얘기에요.
이것은 규칙위반입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개의에 대해서 가하신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이제 동의집 묻겠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기억할수 있지요. 가하신분은 손들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집을 먼저 말씀드립니
다. 재석의원 34인중에 개의집 15표 올시다. 동의집 34인인
데 가가 13, 10…… 양편 동의 개의가 다 미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없이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개의집에서 대해서 가하신분 다시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제 동의집 묻겠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가하신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인중에 개의 1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3분지2 되어야만 합니다」 하는이 있음)

실례했습니다.

(「의장 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조영석 의원; 규칙발언하겠습니다. 이제 표결을 했는데 동의와 개이가 있어서

(「표결중에 발언못해요」 하는이 있음)

발언권 여기에 있어요. 규칙발언했으니까 우선권이 있는 것이예요. 동의 개이가 있을적에는

(조영석의원 발언도중)

○의장 박명준; 양차 미결되었으니 폐기되었습니다.

○조영석 의원; (계속) 과반수가 되는것입니다. 만일 이 의제가 재의가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것을 결의했으면 3분지2가 필요하지만 동의 개이를 받아 들어서 표결했는데 3분지2가 어떻게 필요하다 그런 이론이 줄수가 없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과반수로서 논의해서 될수있는 것이예요. 만일 표결하는 방법으로 재의 문제를 내가지고 집행부의 재의가 타당하냐 안하냐 한가지만 물었으면은 이것 3분지2선을 가지고도 되는것이지

(「웁소」 하는이 있음)

동의있고 개이를 받아들여서 표결했는데 3분지2선을……그런 표결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의장 박명준; 폐기되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하는이 있음)

(장내소연)

오늘 오전회의는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어요.

오전회의를 이로서 폐회합니다.

(13시 25분 산회선포)

(15시 10분 개회)

○의장 박명준; 착석해주십시오. 출석의원 26인으로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여러의원동지앞에 몇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오늘 오전회의에 너무 질서를 문란케해서 이사람 사회자로서 유능치못해서 그렇게된데 대해서는 의원들앞에 대단히 미안하고 또한 무능한것을 사과합니다.

그실은 그사회자로 생각하기는 이러한 조례안심의와 표결은 3분지2 이상의 재석의원이 되어야만 하는것으로 알았기때문에 재석 3분지2로서야 결정을할수있다고 생각해서 오전회의때에 이사람이 34인중 18표로서 통과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폐기선언하는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너무 의석이 소란하기때문에 조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사람으로서는 정식으로 허락한것을 생각은 없고 허락하는중에 의사봉을 치는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봉을 쳤든것입니다.

그래서 혹 의원중에서는 사회자가 의사를 진행하는데 대단히 불만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본즉 그 의사봉을……발언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의사봉을 친것은 너무 당황해서 의사봉을 친것입니다.

이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조영석의원 먼저…….

○조영석 의원; 지금 의장께서 오전회의의 상황을 말씀이 계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석연치 못한것은 오전회의의 표결결과가 어떻게 되는것이지……? 본의원 잘알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표결을 하는데에서 정족수문제를 가지고 제가 발언하려고 했기때문에 그시간이 아니면 효력이없는 그 사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시간에 제가 발언요구를 했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의장이 발언권을 주신것으로 알고 발언을 했는데……발언도중에 의장께서 의사봉을쳐서 표결을 선포하셨다 그말이에요. 이 표결선포를 아마 폐기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신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되었다고하는 사실이 합법적이나 하는 문제는 또한가지 우리가 의논해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폐기선언한것이 불법이라하는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잠깐 혼란했기 때문에 제발언이 확실치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저는 거기에 상당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폐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규명했든 것입니다.

왜 가결이 되었느냐 하면 그안건 자체가 동의와 개의와 양안이 있어가지고 양안을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비슷한 안건이 나와가지고 그안건을 가지고 표결에 부쳤을때에도 언제나 과반수선으로 이것이 결정짓는것이 통상……말하자면 실례라고 생각을하고 그것이 회의법에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개의의 내용은 건설분과위원회가 내는 대안이요 동의의 내용이 재의요구가……재의요구하는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월권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표결할 때에는 그 안건을 하나만 가지고 3분지2선을 통과해야만 하지만 동의의 내용이 재의요구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아니라 재의요구 자체를 집행부에 返戻하자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응당 동의와 개의가 각각 성질이 다른 별다른 안건으로 취급되어서 이것이 표결에 부치게 되었는데……표결에 결과는 개이가 34명중 18명 과반수를 넘는 18명 찬성으로서 가결된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러한 이론을 부인하고 이것을 재의요구에 따르는 표결이기 때문에 3분지2선을 넘어야한다는 이론이 나오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이러한 경우에 타당치 못하다고 하는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재의요구 그것 하나만 가지고 순전히 표결을 한다고하면 응당 3분지2선을 넘어야 하지만……이것이 일단 절차가 변경되어서 대안이 원칙적으로 나올수 없는 대안이 대안으로서 채택되어 가지고 개의로 되어있고 동의가 되어있는 이상 두가지 안건을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는것이 응당 옳은일이 아닌가……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옳으냐하면……전일 비슷한 문제를 놓고 어느편이 옳으냐고 묻는다고하면 거기에 찬반의 의사가 각기 나올수 있습니다마는……딱 한가지만 내놓고 이것이 좋냐 그르냐 물을적에는 표결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알수있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이것을하면 양쪽을 내놓고 옳은손이 좋으나? 발은손이 좋으나? 물었을적에는 왼손이 좋다 발은손이 좋다 하는 사람은 몇사람씩 나오겠지만 발은손 왼손이 없이 하나만 내놓고 이것이 좋냐고 물을적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결과적으로 수자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중에 논의되었든 그러한 문제는 응당 과반수 선으로서 결백해야만이 합법적이라고 하는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장이 오전중에 이문제를 폐기된 것으로 선포를 하셨다고하면 좀더 이것으로 논의해서 이것이 정정해가지고 가결해가지고 다시 선포한다든지 해야지 그문제를 그대로두고 다른문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우스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문제에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해명을 기해주시고 좀더 냉정을 기해서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이요」 하는이 있음)

(사회교대)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조영석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 이제 조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부러 의장께서 정정한 오전회의에 대한 경과를 말씀하신중 특히 의장께서 사회하실 당시에……재의의 통과선이 3분지2 선이라고 하는것을 항상 염두에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그와같은 선포를 하셨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요문제가 그선언 자체를 다시 번안하는 의미

로서 저는 해석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규정을 먼저 저놓고 그다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논의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의장께서 다시한번 이문제를 명백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준 의원;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후에 한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즉 그 재의요청서를 返戻한다는 동의와 또 개의가 있었는데……단순히 우리가 그동의와 개이에 대해서만 하는것은 그 3분지2라고 하는 그선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 않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고로해서 그동의와 재청 그점만하면 이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과반수로서 능히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전에 3분지2선을 머리에 가셨기때문에 그한점만을 생각하고 또 동의와 재청에 대해서는 그조례에 대한것에 대해서 심의와 혹은 표결을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오전에 그와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로 년후에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폐기한다는데 대해서는 잘못된것으로 하고 그것을 한번 폐기선언을 했든것이니까 어떻게하면 좋을는지 여러의원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정만하면되요」 하는이 있음)

(「그정도로 말씀하시고 내려오십시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오전에 폐기선언한것을 그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의장석에서 해야합니다」 하는이 있음)

(「의장을 바꿔하세요」 하는이 있음)

(사회교대)

○의장 박명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폐기선언

한 그문제 대해서 그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 알려주시고 그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의와 재청에 대해서 34명중에서 18표로 된것에 대해서는 여러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김의원 말씀하세요.

○김제윤 의원; 의장이 오전회의에 언급을 해가지고 취소까지 이르른 3분지2선에 대한 그한계에 대한 설명이 물론 자기가 아마리 전지전능한 그러한 경우라도 다 자기부족과 잘못이 있을때에는 즉각 시정하는것은 온당한 순서예요. 이렇게 믿고있는 바이지만……이사람은 매우 석연치 못하기 때문에……또 이사람 자신이 그문제에 즉 의장이 취소하는 3분지2선에 대한 그 한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건 그자체가 재의요청으로 말미아마 이것을 재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것인데 그 결과는 엄연히 회의법에 명시되어 있을뿐外라 더군다나 119조에 역시 명시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표결방법에 있어서……동의와 개의문제에 있어서 매우 그문제에 있어서 석연치 못하고 더더군다나 그 해석에 따라서 너무 곤란한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실지 모르겠으되……이문제의 안건자체가 재의요구에 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재의요구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대로 수자 3분지2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返戻되지 않는가 하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의장이 그러한 방향으로서의 취소가 34대 18표로 이것이 가결이 되었다하는 경우에 대한 이 설명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가결이되어서 어떻게 된다

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건설분과위원회안과 집행부의 안과 그대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재의요청한대로 통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매우 석연치 못합니다.

이런고로해서 기히 의장께서 3분지2선에 대해가지고 의장이 취소를 얘기했을진대 이 본의원이 뿐만아니라 본의원과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납득이 갈수있는 방향으로 의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시는 있음)

○의장 박명준; 방의원 말씀하세요.

○방동석 의원; 오전회의에서 논란되든끝에 개의와 동의의 표결로 의장께서 분명히 원안 폐기된것으로 의장께서 분명히 원안 폐기된것으로 의사봉을 치게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후회의에 들어와서 조영석의원의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의장이 오전회의에 의사봉이 잘못됨으로 스스로 의장 입장에서 취소를했다 이렇게 지금 이문제가 다시 도라다는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발언의 순서에 있어서 다소 앞서니 뒤서니하는 감이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이 취소를 하기까지 이르겠다고 하는 의원인은 이유는 더이상 묻지않고 케지않겠습니다.

의장의 오전회의의 의사진행은 분명히 잘하셨다고 보아서 취소할 이유와 근거가 那邊에 있는것인가 이렇게 반문과 의문을 가져가지고서 이발언을 계속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의에 주문이있고 동의에 주문이 분명히 있다 그말이에요. 개의의 주문은 어디까지든지 과반수선에서 통과를 볼수있는 내용의 것이요 동의에 주문은 집행부 재의를 채

택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에 3분지2선이 필요하게 되었던것이 동의의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의 의사봉이 어떠한데에 근거를두고 어떠한데에 한계를 가지고 치게되었다는것을 먼저 우리가 캐기전에는 의장한테 스스로 취하를 요구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개의의 주문은 과반수선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결의할수 있는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개의보다 앞설수있는 개의냐 하는데에 있어서 본의원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수 없는것이에요.

이것은 사사로히 방동석 개인이라든지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사정에 있어서 어느정도 혹은 동의한다든지 이해도 할수있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든지 법의 절차와 법의 분명한 근거하에서 우리가 이론을 따질때에 자기의 선포된것을 하고 이것이 스스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견에 대한 그자체의 본질을 이탈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동의의 주문에 개이가 앞설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법의 절차부터 규명해놓지 않으면 이문제가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개이는 어디까지든지 개이가 채택된 연후에 집행부가..... 법의 절차에 있어서 원안이 폐기됨으로 인해서.....집행부가 다시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있을때에 제기될 것이므로 가부의 결정된 연후가 아니면 개의의 성질은 도저히 성립될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동의주문에 앞서 개이가 선행될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이는 근본자체가 표결에까지 들어갈수 없겠끔 자기 스스로 모순을 내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이가 동의보다 선행되어 가지고 개의

의 표결방법에 대해가지고 3분지2냐 과반수이냐를 논의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나는 스스로 정의감에서 이런 발언을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회의의 과반수선에서 폐기되었다고 하는것은 의장의 정당한 사회로서의 의장의 사회봉이 정당한때에 치셨다고 나는 긍정하지 않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재의가 선행되어서 표결연후에 집행부서 공고한 연후에 다시 나온 재의였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과반수선에서 통과가 되었을것인데 3분지2선을 운운했든 의장께서 폐기했다고 하면 이의가 없는 것이예요. 하지만 동일 안건을 가지고 동의보다 개의가 앞설수 있느냐 동의보다 개의는 앞설수 없는 것이예요. 개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우리스스로 모순이 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의장의 사회가 정정당당했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므로 인해서 의장이 스스로 치는것이냐 자기의 의장석에서 정당한 집행을 사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한다든지 의원 스스로 그자체를 취하할수있는 권한을 행사할수 없다고 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개인의 의견을 말씀들였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이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이문제는 본의원이 개의를 한 사람인데 분명히 3분지2선을 넘어주기를 바라고 넘으리라고 믿고 넘어야 된다는 원칙밑에서 했든것입니다.

방동석의원은 개의집은 과반수를 넘으면 된다는 얘기를 했다 하시는데 요다음 기회에 취소해 주십시오.

또 마땅히 이문제는 본의원이 재의로 간주했기 때문에 3분지2선을 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재의만으로서 국한되었다고 하면 오늘 이러한 혼란이 없었다는것은 여러분이 다같이 동감이실 것이에요. 불행히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큰혹을 하나 붙여서 혹을 때려고 애쓰다가 혹을 갈다가 붙여보내도록 하자는것이 본의원의 의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하는것은 아까 동의집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집행부로 하여금 去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포한 연후에 비로서 개정안이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도 하지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보았다 뿐이지 공포하지 아니한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것입니다.

또 이것은 개정안이 나올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정안 이든 수정안이든 그 한가지를 들고 나왔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할것같으면 재의안과 우리가 과거에 결정한 사항과는 정반대의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었으니까 요것을 중간역할의 조정해서 내면되리라고하는 간단한 견해밑에서 나왔든 것입니다. 요것을 본의원은 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그래서 제가 질문으로서 의장을 통해서 건설분과위원회에 질문했습니다.

건설분과위원회의의 간사로 하여금 답변하기를 7, 8차나 집행부와 협의해서 합의를 본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했고 기록상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골자는 어디에 있느냐 재의에다가 이것을 한테 混屯시킬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건설분과위원

회의 합의를 보았다는 것으로 결론질수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분과위원회의 개정안이라고 하는것은 내가 들은 연후에는 말소되고 마는 것이며 그문제가 재의에 포함 되어서 집행부에서 내는 개의로 간주할수 있다……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문제를 재의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3분지2선으로서 통과시키면 이재의가 당연히 통과 될수 있는것이다. 그러한 견해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그러한 의도하에서 했던 것이며 거기에 과반수선을 넘었습니다마는 3분지2선을 못넘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것을 당연한 문제라고 개의를 주장한 이사람은 인정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집에서 자기의견을 전제하기를 수차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문제가 되었어요. 이것은 동의집에서 주장한것은 나도 동감이나 근본적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이조례안이 재의는 지방자치법 119조에 하등 월권이나 위반된것이 없다는것이 동의집이 주장이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이 올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나 119조를 이용하는것밖에 안되어요. 집행부에서는……그러면 이 재의를 내는 근본 자체의 의견의 해명서가……거기에 대해서는 그내용이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119조를 적용해서 내놓았다고 하면 이것이 모순이니 근본적으로 부시장으로 하여금 여기에대한 사과를 여기에서 할것같으면 지방자치법 119조는 해당되지않고 자기네가 일하는데에 의회로서 먼저 통과된것은 좀 일하기가 불편한 감이 있으니 미안하시지만 지방자치법 119조를 적용하지않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비

위에 받지않으니 이러한 정도 다시 재의를 요청합니다 하는 것을 할수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것입니다.

또 이것을 할수 없다는것을 규정짓는다고 할것같으면 자치법시행령 40조에 의거한 심의회나 조례안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폭적으로 재의를 요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19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만일에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파악할수 있는데 집행부로 하여금 자기네가 생각하는바와 들리는 것은 이것을 고쳐달라는것을 어디에다가 호소할수 있는 것이냐 의회에서 해준 것이니까 의회에 호소할수 있다는데에서 본의원이 냈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19조를 적용하지 않았다는것을 전제했던 것이고 또는 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미스 프란트」로 인정하고 이것을 집행부와 협상하여가지고 집행부에 재의에 전제한다는것을 말씀드렸고 또 재의에 통하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법 119조2항에 의거해서 반드시 3분의2 전원이 있어야만이 참 여기에 정원이 되어야 이것이 재론의 가치가 있고 재의를 논의할수 있다. 또한 통과문제도 자연히 3분의2 선을 넘어야만 정원의 3분의2선이 되어야만 된다고하는 원칙밑에서 개의를 제기했는 사실 이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장님으로서는 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의를 하신견해로 하셨다고 보는데 이문제는 앞으로 여하히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소에 대한 취소를 또한번 하지 않으시면 안될까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들어갑시다.

(「의장!」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중구; 노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 의원; 여러의원들이 대단히 금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일부분의 개정문제에 대해서 오전중 장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오후로 들어가서 의장으로부터의 오전중에 결정지은 본폐기에 대한 가결문제는 취소한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방의원께서는 의장께서 하신 그처사와 회의진행으로서의 하등의 이의가 없이 정당한 처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갑수의 원께서는 자기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이 될줄 알고 이문제를 개의했든 한사람이다……하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려 둡니다.

의장께서 오전중에 말씀하실적에 무언중 회의진행상 대단히 혼란을 가져왔음으로 인해서 의당 의장께서는 대개 3분의2 이상의 정족수를 가질수있는 그러한 수자만이 이문제가 된다고 하는것을 알고 선입감밑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넘우나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무언중 그러한 문제를 가져왔고 또 아울러서 오후로 들어가서는 이문제에 있어서는 의장을 의장으로서의……물론 의장사회밑에서 본건에 대한 처결문제에 있어서는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취소한다고 하는것을 방금 얼마전 이자리에서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의원도 잘알고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재삼 재론하는것 같습니다마는 방의원께서는 대단히 의장으로부터 처사한 그문제는 정당하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다시한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말을 하게되느냐하면 의장께서 개인적인 면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을 취소한다 이러한 발언을 했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것을 단정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의장으로서는 시

의회를 대표해서 공식석상에서 취소한다고 했으면 의당 그것은 취소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의원께서는 어떠한 해석과 어떠한 의도하에서 그것을 정당한 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본 의원으로서는 아까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 처사와 의견이 가장 금반 안건으로 상정되어있는 이안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적당하며 정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감을 느낀다는것은 재석의원 과반수로서 통과될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며 아까로 개의를 말씀했던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집행부 자체에서는 지방자치법 119조와 시행령 40조를 적용해서 재의요청합니다 하는것을 의장님 자체가 우리의원 자체가 좀더 원만히 이끌어 나간다는것 보다도 회의진행상 의원 자체가 발언하는것이 타당한 본안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제해놓고 동의나 개의를 안받으셨든 지금 이시간에와서 의장으로부터 취소한다든가 취소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나온 이 안건을 가지고 재의를 요청한 문제가 지방자치법 119조를 적용해서 또 시행령 40조를 적용해서 부시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데에서 우리가 냈다고 말했을적에 각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지방자치법 119조하고 시행령 40조하고는 하등에 전번에 우리가 통과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는 월권 내지 부당한 처사를 감행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했을 당시에 의장으로부터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의원 자체에게 재의를 요구한 이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재의를 수락하느냐 재의를 수락하지 않느냐 이 두가지 가운데에 한가지만을 채택해서 가부를 물었

든들 하등의 이자리에 나와서 사실상 취소를 하느니 취소를 안하느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어떤 말을해서 시원히 그안건의 이론에 적합하지 않는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이론을 받아서 동의나 개의를 채택해서 가부를 물은데에서 부터만이 이러한 일이 생기기 않았는가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런고로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아까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의당 본건에 대해서 오전중에 재의는 34명중 18명으로 가결되었다고 하면 아까 의장님으로부터 취소를 말씀하신 그발언이 가장 정당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것을 한가지 느끼면서 또한가지는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질문 본의원으로서는 해석하기 곤란하다는것을 몇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갑수의원께서는 이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재석의원이 3분지2 이상을 받을줄 알고 개의를 했던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본의원이 해석하기에는 이갑수의원 개인이 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찬성을한 이 사람만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해석밑에서 개의에 찬성했던 사람은 아니올시다.

본안건이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하게된 것을 수락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을 의장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고 하면 거기에대한 문제가 본의원도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만 안건이 한 안건을 가지고 각도를 두가지로 분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에서 백보양보를하고 부시장으로부터 이자리에 나와서 사과할것을 전제로하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개의를 내놓은 이것을 백보양보해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방향

으로 하여금 개의를 동의했습니다……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러한 의미로서 이 개의에 支持를 했던 한사람이 올시다.

그런것이 이갑수의원께서 이자리에 나와서 나는 재석의원 3분지2 이상이 가결될것을 전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서 나는 개의를 했던 한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찬성했던 본의원이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하는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해결방법으로서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다고하면 이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갑론을박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리라는 문제와 또 이문제 하나를 가지고 오전 오후 회의를 통해서 장시간 논의한데자 그 문제가 재삼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지 못하는 것과 앞으로에 물론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석연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하면 장시간 다시한번 논의되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게 일임하고 여기에서 그 수습 여기에대한 대책위원을 한 5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가결된 그 사항을 내일 이 본회의에 다시 제출해서 그문제를 원만한 해결책을 가져오는 방향이 이문제를 수습하는데 유일한 길이 아닌가 느끼면서 여러의원께서 찬성하신다고 하면 이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앞으로 더 계속한데자 그말이 그말이라는 본의원의 해석 여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장시간 이문제를 재삼 논의한데자 과히 효과적인 그러한 문제가 발견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수습위원이라 할까 이 다섯사람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고 그 위원 지명 문제에 있어서 방금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서 다섯사람을 지적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그시간에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세요」 하는이 있음)

이문제를 동의하겠습니다.

(「재청 삼청」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중구; 지금 동의가 나왔습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 의원; 이제 노승환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이 조례안 하나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에 논의되었습니다.

그런고로해서 이문제를 간단히 의사진행상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람으로서 동의에 首背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논의된다고 하면은 피차간에 법률해석이 한 시간 두시간에 끝날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동의한 사람에 한사람입니다마는 여러분이 동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의가 있다고하면 여러의원이 동의하시면 동의한 사람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다면 많이 계실줄 압니다.

이갑수의원이 개의하셨고 여러 의원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몇시간 하루종일 이문제를 여기에서 말씀한다고 하면 자연히 그시간이 길게되니 동의에 말씀드리거니와 일단 이 문제를 그 처리하는데 있어서 피차간에 동의 개의다 각 견해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금반 조례 안건을 일단 보류해 가지고 처리를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노승환의원이 동의를 채택해서 운영위원회

에 일단 그 안건을 보내가지고 동의가 옳다 개의가 옳다 또 의장께서 취소한 조례가 3분지2선이나? 과반수로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것을 일단 마칩시다.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안만 일단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상정하기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더 이상 논의하는 발언을 제한하는것이 아닙니다만은 의사진행상 속히 하기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정도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동의에 이의없으시지요?

(「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가만계세요. 노승환의원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이처리를 운영위원회에 다섯사람 처리위원을 선임해서…….

(「의장 한가지 첨가할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박수형 의원; 그런데요. 하나의 조례안을 가지고 이 사태를 이까지 가져왔다는 이자체에 대해서 물론 의장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또한 可會함에 있어서 능숙하지 못한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의원 자체가 그 책임의 절반 정도는 분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예를 들어서 갑론을박으로서 안되었다고 그럴때에는 역시 의장한테 根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노승환의원의 그 처리 방안에 있어서 동의에 찬성합니다마는 아까 의장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던 통과된 것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위원회가 내일 또 다시 같은 의사진행에 상정하는 것이 나로서의 견해가 옳은것 같습니다.

처리위원회 구성으로 다섯 사람이 되든 동의한 처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국회 의사진행법을 저작한 김호진선생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실을 잘 물어가지고 만약 의장이 가결 선포한것이 옳으면 재론에 부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옳지 않다면 처리위원회에서 연구하고 그분들의 의도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차제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의장이 아까 선포한 만큼 의장의 권한을 인정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일이 또 안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위하여 이 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정당하게 의장이 통지시킨것을 선포한 것을 또 그냥 보류해두고 왈가왈부해야 결정 안남니다.

일단 의장이 선포한것을 수락하고 다섯사람 처리위원으로서 의장이 선포한 그것이 옳으면 불문에 부치고 만약 옳지 않으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중구;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문학우 의원; 오전 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선포한것을 아까 분명히 선포 취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개의회가 통과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의회가 통과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무슨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뭐를한다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의사진행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모독하기 때문에 오후회의가 이렇게 혼란이 야기된것도 의장의 의사진행이 모순된 것으로 이러한것이 야기된 것입니다.

회의규칙을 보아도 통과된것은 의회에서 발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언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무모한 발언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까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의장께서 오전 회의에 폐기 선포를 취소하신다고 하면 의당 개의가 통과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왈가왈부하지않고 의장이 선포한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것이 원만히 될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일해야 해결안납니다.

이러한 분위기로서는 해결이 되지않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들만 세우지마시고 좀 관대한 아량을 배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김재광 의원; 제안자로서 여러차례 발언을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노승환의원 또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박수형의원이 뒷받침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일단 오전회의에 있어서 선포를 취소하신다고하면 의당 개의가 과반수 선으로서 가결된것이 인정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박수형의원과 그외 몇분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재의 요구 심의통과선이 3분지2선이라든가 그외 다른 안건 兩案이 제출되어서 통과되었다. 사실상 의장이 그 표결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분명히 과반수선으로 통과를 보았든

것입니다.

이와같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방자치법을 편집하신 사람이라든가 여기에 권위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아서 의장이 선포한 그 취소가 다시말하면 과반수로서 인정된 이 자체가 불법적절차의 모순을 가져왔다고 하면 다시 번안 동의라든가 절차를 밟을수 있을지언정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위원이 있을수 없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본회의에서 이것이 과반수로서 확정이 되었는데 된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소위원회같은 이와같은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하신 분에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일단 가결된것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각자 미급한 점이 아닌게 아니라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의회 스스로 이문제를 낸다든가 그런 방도를 강구해 주시고 우리 의장께서 중대하게 발언을 취소하시고 또 통과가 확정된 이마당에 있어서 만일 처리위원회 안에대해서 한다고 하면 의장에대한 커다란 신임의 결함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특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동의집에게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중구;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보류했다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장내소연)

○김재광 의원;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아니들일수 없습니다.

적어도 조례라고 할것같으면 법률을 제정하는데 이렇게 질

서 문란한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도 오전회의 의 이 표결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1차 표결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그 의사진행상 토론의 여유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반에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납득시키고해서 그 법률 해석을 충분히 납득시켜 가지고 토론을 해야할 것인데 아까 토론을 주지않은 관계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일단 의장이 선포해서 그후 의장이 과오가 있어서 취소를 했으면 당연히 취소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는것이 원리원칙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시장이 나와서 말씀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적에 부시장 말씀이 구태여 119조를 적용해서 해석할것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시행령 40조에 의거해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만큼 이것은 여러분에게 동의를 받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했지만 김재광의원이 개의를 할적에는 분명히 김재광의원의 말씀이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를 보아가지고 나온 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원안에 개정안이 차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칠적에는 각 의원께서는 거기에 충분히 납득해 가지고 표결에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런것을 갖다가 시방 의장께 내일로 보류하자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하면 이 안건은 다시 올라올수있는 안건이 되고 마는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법적 해석에 대해서 가자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법률의 존엄성을 보아서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 할수 없겠음 되어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의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경솔히 방맹이를 치느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일단 의장이 방맹이를 쳐서 선언해 놓았으니까 내일 다시 이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의장이 법의 조리를 갖다가 해석해 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내일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나오세요.

그런만큼 앞으로 의사진행상 의장께서는 십분 고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김제윤 의원; 박수형의원이 아까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의장님 취소선포한 그 존엄성에 대해서 대단히 그것을 구가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인데 물론 한번 취소했으면 취소한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그렇게 나가야 할것으로 이렇게 믿어지나 반드시 여러가지 의견을 다 믿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 취소된것을 받아들여서 이 의견이 여러가지 많이 있는것에 수습으로서 또한 어지로 지연도 할수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대로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맡기자고 하는데 김재광의원 하등에 불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재광의원의 뜻대로 되었어요. 건설위원회 뜻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고집할 필요가 어디있어요. 의장께서는 다음 40항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시간도 거진 되고 또 이제세안을 갖다가 연구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16시 10분 산회)
